

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81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6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6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6. 13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6. 19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비합리적인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용어개정 (안 제2조제9호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